



제 4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75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물 관련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허가 제도 도입	3
2. 반려동물 이력관리 항목에 ‘유실·폐기’ 포함	3
3. 동물 전달 시 직접대면 확인 원칙 도입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16.
3. 회 부 일 : 2025.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련 허가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하여 동물의 번식 또는 반입·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및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추가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함에 있어 동물의 실물이 다른 사진·영상을 통하여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사기 분양·사기 판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허가받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며,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 동물판매업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동물 관련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허가 제도 도입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갱신 시 시설·인력·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생략)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u>
<u><신설></u>	<u>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u>
<u><신설></u>	<u>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갱신</u>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
할 것

5. ~ 11.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
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후
단 신설>

⑤ · ⑥ (생 략)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반입·반출, 유
실, 폐기-----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전달할 것.
이 경우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에게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게 한 후에 직접 또는 동
물운송업자를 통하여 판매 또는
전달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69조제4항 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 9. (생략)

② . ③ (생략)

제85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69조제4항·제6항-----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영업장의 폐쇄) ① -----

-----.

1.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생략) ② ~ ⑤ (생략) 제9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1. ~ 14. (생략) ③ ~ ⑥ (생략)	1. 제6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갱신허가----- -----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69조제1항·제4항·제6항----- -----허가,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 ----- 10. ----- -----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 11.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상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²⁾

이로 인해 허가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시설·인력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허가자에게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며, 갱신 시 시설·인력·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1)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① 허가시 요구되는 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② 특정 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함(「법제기준과 실제」, p.312 참조)

3) 예컨대, 2023년 4월 동물생산업 인력 기준(50마리당 1명)이 강화(시행규칙 별표10)되었으나, 2023년 6월 18일 이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 2023년 6월 17일 이전 허가를 받은 기존 생산업자는 최신 인력 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2. 개별 기준

가.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록 하려는 것으로, 영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갱신허가 제도의 전면 도입은 현장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허가영업장의 규모와 지역 편중, 지자체 인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면 시행 시 현장에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

또한, 갱신허가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갱신허가가 영업의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평가 항목과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갱신허가 후 유효기간의 기산 방식과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적용 기준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갱신허가 불허가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통지⁵⁾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적 보

4) 갱신허가 대상 허가영업장은 전국 약 5.3천 개소로 규모가 크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약 32.6%가 집중되어 있음. 또한 지자체의 동물영업 담당 인력은 통상 1~2명 수준에 불과하여 동물영업 관리 외에도 방역 등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갱신허가 제도의 전면 도입 시 현장 집행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됨.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의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 또는 분배 실적이 없으면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모든 허가영업을 일괄적으로 갱신 대상에 포함할 경우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물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관리 필요성이 높은 동물생산업부터 우선적으로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동물생산자협회는 영업허가 갱신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현재 영업허가 관련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점, 개정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고령의 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반려동물협회는 현행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 기준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갱신허가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기준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반려동물 이력관리 항목에 ‘유실·폐기’ 포함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기록·관리·보관하여야 할 이력 항목에 반입·반출 외에 ‘유실 및 폐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이력을 기록·관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제16호).

현행	개정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동물의 번식, <u>반입·반출</u>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반입·반출, 유실, 폐기</u> ----- -----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u>반입·반출</u>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	16. ----- ----- <u>반입·반출</u> , <u>유실, 폐기</u> ----- ----- -----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반려동물 영업자에게 동물의 번식, 반입, 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의 유실 및 폐사에 대한 기록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영업장에서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입양되지 못해 폐사 당한 동물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동물의 사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⁶⁾ 하고 있으나, 이를 현장서 점검하는 공무원등이 유실되거나 폐사한 동물의 현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현장 점검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영업장에서 고의로 폐사시킨 후 이를 은폐하는 행위와 사체를 냉동고 등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6)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불법 매립소각하여 은폐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⁷⁾

따라서 개정안은 영업장에서 반려동물의 생산·유통·유실·폐사 및 사체 처리에 관한 전 단계를 포괄하는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업장에서 고의로 폐사당하는 동물을 보호하고, 영업장 내 폐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조치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현장 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임.

7) “번식장, 냉동고에 강아지 사체 가득…보호소, 위탁 반려견 119마리 암매장”, 경향신문, 2024.03.12.

3. 동물 판매·전달 과정에서의 대면 확인 규정 신설

현행법은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달 방식과 관계없이 구매자가 사전에 동물을 직접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 ----- ----- -----.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후단 신설>	2. ----- ----- ----- 전달할 것. 이 경우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동물을 대

⑤ · ⑥ (생 략)	<u>면하여 실물을 확인하게 한 후에 직접 또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판매 또는 전달하여야 한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매자가 거래 과정에서 동물을 직접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 사육 환경, 개체 특성 등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거래 이후 분쟁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개정안은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전달 방식과 관계없이 구매자가 사전에 동물을 직접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 자체를 금지하지 않되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과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시행규칙 개정⁸⁾을 통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의 판

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 다목 1) (2025. 8. 7. 시행) 다. 동물판매업자 1) 동물

매를 포함하여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후에만 판매하도록 하고, 대면 확인 이후에 한하여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을 허용하는 등, 인터넷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던 동물복지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면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대면 확인 원칙을 법률에 명시함에 있어서는, 이미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사항을 하위법령에 둘 것인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5

을 판매(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판매를 포함한다)할 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뒤에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참고

반려동물 영업 형태 및 입양경로

- ◇ 반려동물영업은 생산·판매·미용·훈련·장묘 등 직접 반려동물을 다루는 업종으로 「동물보호법」에서 총 8개의 영업 규정

* (허가)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 (등록) 전시업, 위탁업, 미용업, 운송업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형태 구분>

구분	생산	판매·유통	양육	사후
기능	• 번식 • 사육	• 분양 • 수입	• 미용, 위탁, 운동, 교육·훈련 등	• 사체 처리 • 장례 서비스
업종	• 생산업	• 동물판매(경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미용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운송업	• 동물장묘업

- ◇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주로 동물판매업자, 지인 등 개인, 동물보호센터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 짐

- 반려동물 입양의 약 26%가 동물판매업자에게서 구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 동물보호소 등을 통한 입양은 12% 수준

< 반려동물 입양경로 >

*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24)



